

대구대학교 조형예술대학 패션학부 - KBS아트비전미용학원 대구동성로 캠퍼스

교 육 협 력 협 약 서

대구대학교 조형예술대학 패션학부와 KBS아트비전미용학원 대구동성로 캠퍼스(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는 당사자간의 우호협력관계를 확인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제휴에 따른 각자의 책임을 인식하며 교류와 협력이 당사자간의 상호 이해증진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의 업무상 상호 공동이익의 증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협력내용

본 양해각서에 의한 제휴협력관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 기관간의 진로진학 관련 내용 공유 및 적극 지원
2. 교육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3. 교육프로그램 개발, 인력, 기술 공유 등의 교류
4. 상호 협력을 통한 신 사업 발굴
5. 기타 양 기관의 상호 발전에 필요한 사항 일체

제3조 효 력

본 협약은 협약서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협의가 있기 전까지 유효하다.

제4조 의무사항

양 기관은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한다.

제5조 기밀유지

양 기관은 업무상 취득된 정보내용을 외부 유출 또는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6조 기타사항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내용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양 기관의 협의하에 결정한다.

본 협약서는 20 년 월 일 2부를 작성, 날인되었으며, 이 모두는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KBS아트비전미용학원 대구동성로 캠퍼스

대 표 배 형 자

배경자

대구대학교 조형예술대학

학 장 이 해 만

이해선

교 육 협 력 협 약 서

대구대학교 조형예술대학 패션학부와 KBS아트비전미용학원 대구동성로 캠퍼스(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는 당사자간의 우호협력관계를 확인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제휴에 따른 각자의 책임을 인식하며 교류와 협력이 당사자간의 상호 이해증진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의 업무상 상호 공동이익의 증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협력내용

본 양해각서에 의한 제휴협력관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 기관간의 진로진학 관련 내용 공유 및 적극 지원
2. 교육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3. 교육프로그램 개발, 인력, 기술 공유 등의 교류
4. 상호 협력을 통한 신 사업 발굴
5. 기타 양 기관의 상호 발전에 필요한 사항 일체

제3조 효력

본 협약은 협약서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협의가 있기 전까지 유효하다.

제4조 의무사항

양 기관은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한다.

제5조 기밀유지

양 기관은 업무상 취득된 정보내용을 외부 유출 또는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6조 기타사항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내용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양 기관의 협의하에 결정한다.

본 협약서는 20 년 월 일 2부를 작성, 날인되었으며, 이 모두는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대구대학교 조형예술대학

학장 이 해 만

이 해 만

KBS아트비전미용학원 대구동성로 캠퍼스

대표 배 형 자

배 형자

교 육 협 력 협 약 서

대구대학교 조형예술대학과 (주)올댓뷰티아카데미 (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는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 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양쪽 간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상호신의)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수행을 위해서 상호신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협력한다.

제 3조 (협약내용)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협력한다.

- ① 교육기관의 진로진학 관련 프로그램과 대학 교육 분야 연계
- ② 교육프로그램, 인력, 기술 및 정보 등에 대한 교류
- ③ 교육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 ④ 교육기관 대학연계를 통한 신 사업 발굴
- ⑤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제 4조 (효력)

본 협약은 양 기관의 장이 협약서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 5조 (비밀유지)

양 기관은 업무상 취득한 상호간의 정보내용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 6조 (기타사항)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양 기관의 합의하에 결정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이 1부 씩 보관한다.

2023. 4. 6

대구대학교 조형예술대학

학장 이 해 만

(주)올댓뷰티아카데미

대표 최 지 형